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2. 6.>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 노업	유원시설업			
		종합 여행 업	국내 외여행업	국내 여행업	호텔업									휴양 콘도 미니 엄업	전문 휴양 업	종합 휴양 업	야영 장업	관광 유람 선업	관광 공연 장업	외국 인관 광 도시 민박 업	한옥 체험 업	국제 회의 시설 업		국제 회의 기획 업	종합 유원 시설 업	일반 유원 시설 업	기타 유원 시설 업
					관광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 업	가족 호텔 업	한국 전통 호텔 업	호스 텔업	소형 호텔 업	의료 관광 호텔 업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법 제5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1600	1200	800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 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3)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 4)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

2000

1200 800

800 400

400

13.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14. 법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15.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16.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법 제35조	800	400	200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8조	800	400																								
17.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한 경우		800	400																								
18. 법 제7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300	800	400	80